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080100142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08.08.02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09.11

SKINFOOD

1957

정보공개서

주식회사 스킨푸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3. 04. 05.
주식회사 스킨푸드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5 어반벤처빌딩 5층
전화번호: 02-597-4191 팩스번호: 02-597-4199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여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식회사 스킨푸드	스킨푸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5 어반벤처빌딩 5층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4.10.06	2004.10.06	구도곤	02-597-4191	02-597-4199
	법인등록번호	134611-0026464	사업자등록번호	125-81-54503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임원)	구도곤	스킨푸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5 어반벤처빌딩 5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구도곤	02-597-4191	02-597-4199
사용인(임원)	김명준(등기)	스킨푸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5 어반벤처빌딩 5층		
사용인(임원)	김병호(등기)	스킨푸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5 어반벤처빌딩 5층		
사용인(임원)	김태욱(등기)	스킨푸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5 어반벤처빌딩 5층		
사용인(임원)	최원준(등기)	스킨푸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5 어반벤처빌딩 5층		
사용인(임원)	김미정(감사)	스킨푸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5 어반벤처빌딩 5층		
계열회사	(주)아이피어리스	아이피어리스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제2공단1길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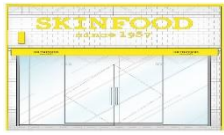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스킨푸드	
상 호	스킨푸드 00점	
상 표	SKINFOOD	상표 등록번호: 40-1182568-0000 등록일: 2016년 06월 03일 존속기간 만료일: 2026년 06월 03일 출원번호: 40-2015-0047698 출원일: 2015년 06월 26일
	SKINFOOD 1957	상표 등록번호: 40-1685203-0000 등록일: 2021년 01월 18일 존속기간 만료일: 2031년 01월 18일 출원번호: 40-2020-0018981

		출원일: 2020년 02월 05일
		상표 등록번호: 40-1987915-0000 등록일: 2023년 03월 08일 존속기간 만료일: 2033년 03월 08일 출원번호: 40-2022-0117176 출원일: 2022년 06월 23일
서비스표		서비스표 등록번호: 41-0143776-0000 등록일: 2007년 01월 30일 존속기간 만료일: 2027년 1월 30일 출원번호: 41-2006-0007801 출원일: 2006년 03월 28일
서비스표		서비스표 등록번호: 41-0373902-0000 등록일: 2016년 10월 06일 존속기간 만료일: 2026년 10월 6일 출원번호: 41-2016-0011884 출원일: 2016년 03월 14일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9,868,665	3,526,695	6,341,970	31,987,486	-3,691,684	-4,901,560
2022년	14,578,674	3,350,889	11,227,785	37,532,170	4,893,766	4,946,604
2023년	24,146,230	4,262,164	19,884,065	58,939,238	8,953,300	8,665,706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당사는 가맹사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직영점 매출액도 포함된 것)은 위 1)의 매출액과 동일합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구도곤	대표이사	2021. ~ 현재	(주)스킨푸드 대표이사	경영총괄
			2018. ~ 2020	(주)코스알렉스 팀장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김명준	이사(등기)	2023. ~ 현재	(주)스킨푸드 사내이사	CFO
	최원준	이사(등기)	2023. ~ 현재	(주)스킨푸드 비상무이사	비상근
	김병호	상무(등기)	2020. ~ 현재	(주)스킨푸드 비상무이사	비상근
	김태욱	상무(등기)	2020. ~ 현재	(주)스킨푸드 비상무이사	비상근
	김미정	감사(등기)	2019. ~ 현재	(주)스킨푸드 감사	비상근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2	3	64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른 가맹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의 특수관계인을 아래와 같이 경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 아이피어리스	별도의 가맹사업 해당 없음	2004. ~ 현재	스킨푸드 화장품 제조 및 기타 상품 생산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IV. 3. 4)항에 기재하는 바와 같이 귀하는 당사와 귀하 사이의 계약기간 종료 즉시 아래 상표, 서비스표 등 사용을 지체 없이 중지하여야 합니다.

명 칭	권리내용	상표권 현황	등록번호	소유자	존속기간만료
SKINFOOD (상표권)	상품 판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영업 활동	2015. 06. 26 출원 2016. 06. 03 등록	등록번호: 40-1182568-0000	(주)스킨푸드	2026. 06. 03
SKINFOOD 1957 (상표권)	상품 판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영업 활동	2020. 02. 05 출원 2021. 01. 21 등록	등록번호: 40-1685203-0000	(주)스킨푸드	2031. 01. 21
SKINFOOD 1957 (상표권)	상품 판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영업 활동	2022. 06. 23 출원 2023. 03. 08 등록	등록번호: 40-1987915-0000	(주)스킨푸드	2033. 03. 08
 (서비스표)	상품 판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영업 활동	2006. 03. 28 출원 2007. 01. 30 등록	등록번호: 41-0143776-0000	(주)스킨푸드	2027. 01. 30
 (서비스표)	상품 판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영업 활동	2016. 3. 14 출원 2016. 10. 06 등록	등록번호: 41-0373902-0000	(주)스킨푸드	2026. 10. 06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스킨푸드 가맹사업 현황

1. 스킨푸드를 시작한 날: 2004년 12월 3일

2. 스킨푸드 연혁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스킨푸드	스킨푸드	조윤희	2004.12.03~2019.08.30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제2공단1길 104
		김창권	2019.01.22~2019.10.18	
		김한울	2019.09.05~2019.11.22	
		유근직	2019.11.22~2021.08.22	
		구도곤	2021.08.23~현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5, 5층

3. 스킨푸드 업종

영업표지	업종	
스킨푸드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화장품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등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스킨푸드 가맹점 및 직영점 총 수

(단위 : 개)

지 역	2021. 12. 31			2022. 12. 31			2023. 12. 31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29	27	2	22	22	0	19	19	0
서울	7	5	2	4	4	0	3	3	0
부산	2	2	0	2	2	0	2	2	0
인천	1	1	0	1	1	0	1	1	0
대구	2	2	0	2	2	0	1	1	0
광주	0	0	0	0	0	0	0	0	0
대전	1	1	0	1	1	0	1	1	0
울산	0	0	0	0	0	0	0	0	0
경기	3	3	0	1	1	0	1	1	0
강원	3	3	0	2	2	0	2	2	0
충북	1	1	0	1	1	0	0	0	0
충남	1	1	0	1	1	0	1	1	0
전북	0	0	0	0	0	0	0	0	0
전남	1	1	0	1	1	0	1	1	0
경북	0	0	0	0	0	0	0	0	0
경남	6	6	0	5	5	0	5	5	0
세종	0	0	0	0	0	0	0	0	0
제주	1	1	0	1	1	0	1	1	0

5. 바로 전 3년간 스킨푸드 가맹점 수

(단위 :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37	0	3	7	0	27
2022	27	0	0	5	0	22
2023	22	2	0	5	0	19

6. 스킨푸드 외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스킨푸드]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은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표에서 기재한 연간 매출액은 2023년에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한 가맹점 수를 제외한 19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이며, 가맹점 수가 5곳 미만인 지역의 가맹점을 포함한 가맹점의 평균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평균매출액(상한)		연간평균매출액(하한)		
		연간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19	202,059	17,494	1,073,302	92,367	16,519	2,466	
서울	3	-	-	-	-	-	-	5곳미만
부산	2	-	-	-	-	-	-	5곳미만
인천	1	-	-	-	-	-	-	5곳미만
대구	1	-	-	-	-	-	-	5곳미만
광주	0	-	-	-	-	-	-	-
대전	1	-	-	-	-	-	-	5곳미만
울산	0	-	-	-	-	-	-	-
경기	1	-	-	-	-	-	-	5곳미만
강원	2	-	-	-	-	-	-	5곳미만
충북	0	-	-	-	-	-	-	5곳미만
충남	1	-	-	-	-	-	-	5곳미만
전북	0	-	-	-	-	-	-	-
전남	1	-	-	-	-	-	-	5곳미만
경북	0	-	-	-	-	-	-	-
경남	5	39,972	3,053	64,979	7,658	26,687	1,761	
세종	0	-	-	-	-	-	-	-
제주	1	-	-	-	-	-	-	5곳미만

당사의 가맹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 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매출액은 가맹사업자 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액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스킨푸드]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19개	3,706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지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스킨푸드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본 지출 내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당사 재무제표상의 지출 내역으로 당사가 매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6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5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주) 스킨푸드 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5,431,463	5,431,463	0	
광고	소계		5,409,089	5,409,089	0	
	TV	연중	(비공개)	(비공개)	0	
	라디오/잡지	연중	(비공개)	(비공개)	0	
	인터넷+기타	연중			0	
판촉	소계		22,374	22,374	0	
	일반 행사	연중	(비공개)	(비공개)	0	(비공개)
	기타	연중	(비공개)	(비공개)	0	(비공개)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우리은행	선릉역금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4 엘앤비타워	02-568-2445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필요서류 (은행양식)	- 가맹금예치신청서 1부(별첨 3 참조)
준비서류	- 가맹점사업자의 계좌 사본 1부 - 가맹점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가맹점사업자의 신분증 사본 1부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1부
이용방법 (다음 중 택 1)	방법1.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에 가맹금 예치신청서 접수→은행영업점에서 가맹금입금용 에스크로 계좌 수취→에스크로 계좌에 가맹금 입금 방법2. 가맹본부가 우리은행 에스크로 홈페이지에 가맹금예치신청서 내용등록→가맹점사업자의 휴대폰으로 가맹금 입금용 에스크로 계좌 문자발송→휴대폰 문자로 받은 에스크로 계좌에 가맹금을 입금→가맹본부는 입금 확인 후 가맹사업자에게 가맹금예치증서 교부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라. 가맹본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스킨푸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판매 설비 비용, 물품 구입 대금 등과 같은 기타 비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련 비용 및 기타 비용 등은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예외적 반환사유
총계	10,000			
가입비	5,000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원칙적으로 반환 불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위 법률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자의 귀책정도 등이 고려된다.
최초 교육비	5,000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원칙적으로 반환 불가	

2) 귀하가 당사에 납입할 보증금은 없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가입비	5,000
최초교육비	5,000
합계	10,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지급대상	금액 (하한가~상한가)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56,800~132,500	5,079~11,849			36.9㎡ 기준 (평수에 따라 변동가능)

필수설비 (아크릴 장 등)	㈜스킨푸드	2,000~5,000	178~447	개점 1주일 전	주문 전 계약취소	-
인테리어 (간판 등 포함)	협력업체	30,000~90,000	2,682~8,048	선금 : 착공 7일 전 50% 입금 잔금 : 준공 후 익월말 50%입금	공사착공전 계약취소 (견적비와 기발주된 비범용 자재비 제외)	-
최초 공급 상품 비용	㈜스킨푸드	20,000~30,000		개점 1주일 전	상품 미공급시	평수에 따라 변동가능
기타 이벤트 등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	3,000~5,000		-	개점전 계약취소 (그간 소요비용 제외)	이벤트 소요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포스장비 등	협력업체	1,800~2,500		-	주문 전 계약취소	매장 보유 장비에 따라 변동 가능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당사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기를 희망할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당사의 규정에 맞는 설비 등을 갖춰야하며 당사의 감리를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당사는 귀하에게 감리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수준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오프라인 그로스팀	1)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2)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점포 입지 분석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스킨푸드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추후 별도 계약체결 시 협의를 통해 업체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총액	계약금	잔금
금액(천원)	10,000	총액의 50%	총액의 50%
납부일		계약일+3일	계약일+1월
비고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비 및 판촉비에 대한 세부 부담기준은 37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불가사유	비고
광고 분담금	(주)스킨푸드	행사별로 분담 등				
개별 행사 및 판촉분담금	-	행사별로 분담 등				
교육훈련비	-	별도로 정함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미지정	별도로 정함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 비용(일부 수리 및 아크릴장 등 공급 포함)	협력업체	0~40,000 (변동 가능)	교체·보수 공사 실시 5일 이전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매장평수, 수리 품목 등에 따라 변동
점포환경개선 비용	미지정	가맹본부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41쪽 ~ 42쪽 참조
지연이자	(주)스킨푸드	법정이율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물품대금 (이벤트물품포함)	(주)스킨푸드	주문금액	주문일 14시 이전			주문 물품에 따라 변동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영업보고	당사 소정의 영업보고서를 작성 및 보고	매일
경영지도	당사가 제공하는 각종 상품에 관한 특성 및 사용 방법, 시장분석, 매출 증진에 관한 사항, 종업원 교육 지원 등	수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하기 위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가맹금의 금액에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은 가맹계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통지될 것입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 가맹계약의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②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가맹사업자의 영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당 상표권의 유효기간의 갱신 등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③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가맹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스킨푸드 운영권은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한 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도인이 기납입한 가맹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양수인은 가맹금 추가 납입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영업 양도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명의 개서 기타 가맹본부의 관리 비용(1백만 원 내외), 신규 교육 비용(2백만원 ~ 4백만원: 매장 규모 및 직원 수에 따라 상이), 가맹본부 수퍼바이저 파견 비용(1백만 원 ~ 3백만 원: 파견 기간에 따라 상이), 초기 홍보행사 및 이벤트 비용(1백만 원 ~ 4백만 원: 매장 규모 및 위치에 따라 상이) 등을 영업양수인

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단, 추가 부담 비용의 총합은 가맹금인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 상표, 상호 등 “영업표지” 일체를 사용할 수 없고, “영업표지”가 일부라도 표시되어 있는 간판, 기타 시설물 등 일체를 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지체 없이 철거 내지는 제거하여야 하며, 기타 상표 및 상호 등 “영업표지” 일체의 사용 중지 요청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이의 없이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미판매 상품은 하자(개봉상품,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 상자나 라벨이 훼손된 상품 등)가 있는 것이 아닌 경우 공급가의 90%로 당사가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외의 처분방법은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동의 하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도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한 목적에서, 귀하의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스킨푸드]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②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별첨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상품,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품질의 유지·관리 및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저질 상품의 공급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 등의 달성을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주식회사 스킨푸드 명시되어 있는 모든 상품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상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당사 소정의 해지 절차에 따름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당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의 판매 제한

당사의 신용 및 명성, 그리고 품질의 유지·관리 및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저질의 상품이 공급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상품이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품의 사용 등과 관련된 충분한 설명이 없이 판매되는 경우를 예방하며, 또한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최종 소비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귀하가 귀하의 매장에서 당사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 등의 소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최종 소비자가 아닌 자(예를 들어, 영리의 목적으로 재판매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자 등)에게 공급하거나, 귀하의 매장이

아닌 제3의 매장에서 공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귀하는 자신의 영업활동 방식이나 내용 등이 당사 및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성과 및 활동은 물론 가맹사업 전체의 성과와 이미지, 통일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점을 감안하고,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존중하기 위하여 당사와 합의한 매장이 아닌 제3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당사에 알리고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정하고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상품 내역과 그 권장 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하가 판매하게 되는 구체적인 상품 목록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theskinfood.com>’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점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화장품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스킨푸드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 설정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방침일 뿐으로서 아래 설정 기준과 다른 영업지역이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설정될 수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해당 지역에 특수한 사정이 없는 경우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00M를 기준으로 하되, 가맹점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을 거쳐 확정(위 설정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방침일 뿐이므로 위 설정기준과 다른 영업지역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드러그스토어, 편집샵, 면세점, 대형슈퍼, 시장, 공항, 호텔, 지하상가, 학교 교내, 터미널, 쇼핑몰, 지하철역사 내, 고속도로휴게소, 아케이드 등 로드샵 상권과 별개의 특수상권) 등 해당 지역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반경 100M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계약서의 해당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 ①항 내지 ③항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가맹점 사업자는 30일(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이내에 가맹본부에게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회신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등 영업지역을 위반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민사 문제로서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해결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가맹본부가 다음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 또는 취한다면 다음의 조치 중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가맹본부의 전적인 재량에 의합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가맹본부는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다음의 조치 중 어떠한 종류의 조치를 취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맹본부가 조치를 취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맹본부의 조치 후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①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②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았거나 또는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③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스킨푸드'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④ 넷째, 기타 가맹본부의 전적인 재량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조치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스킨푸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일반소매	(주)현대백화점면세점	블랙슈가마스크 등	동일한 제품 판매
일반소매	씨제이올리브영(주)	블랙슈가마스크 등	동일한 제품 판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채널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주)스킨푸드	http://www.theskinfood.com	블랙슈가 마스크등	없음
	11번가(주)	http://www.11st.co.kr	"	"
	(주)AK인터넷쇼핑몰	http://www.akmall.com	"	"
	(주)지에스리테일	https://www.gsshop.com	"	"
	G마켓	http://www.gmarket.co.kr	"	"
	스마트스토어	https://brand.naver.com/skinfood	"	"
	신세계몰	http://shinsegaemall.ssg.com	"	"
	쿠팡(주)	https://www.coupang.com	"	"
	화해	http://www.hwahae.co.kr / 화해 APP	"	"
	주식회사 무신사	https://www.musinsa.com https://www.29cm.co.kr	"	"
	(주)카카오	https://store.kakao.com , https://gift.kakao.com	"	"
	삼성물산㈜패션부문	https://www.ssfshop.com/		
	(주)에이블리코퍼레이션	https://a-bly.com/ 에이블리 APP	"	"
	주식회사 컬리	https://www.kurly.com/	"	"
	그립	https://www.grip.show/ 그립 APP	"	"
	(주)버킷플레이스	https://ohou.se/	"	"
	(주)카카오스타일	https://zigzag.kr/ 지그재그 APP https://posty.kr/ 포스티 APP	"	"
	(주)더블유컨셉코리아	https://www.wconcept.co.kr/	"	"
	㈜에스에스지닷컴	https://www.ssg.com/		
	롯데쇼핑 주식회사	https://www.lotteon.com/	"	"
	(주)작당모의	https://www.zamface.co.kr/ 잼페이스 APP	"	"
	주식회사 헤메코	https://www.hemekolab.com/	"	"
	주식회사 현대이젤	https://www.hyundaiezwel.com/	"	"
	큐텐	https://www.qoo10.sg/shop/skinfoodof	"	"
	라자다	https://www.lazada.com.my/shop/skinfoodofficialstore/	"	"
	쇼피	https://shopee.com.my	"	"
	씨제이올리브영(주)	https://www.oliveyoung.co.kr	"	"
	현대백화점인터넷면세점	https://www.hddfs.com/shop/dm/main.do	"	"

	(주)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 APP	"	"
	TOSS	TOSS APP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사항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4%	50%	10%	36%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전용 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 상품 비중
2023	5%	2%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기존에 이미 체결된 가맹계약을 제외하고, 스킨푸드 가맹사업의 최초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가맹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갱신되는 계약의 계약기간은 갱신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그 이후 계속 갱신되는 경우에도 갱신되는 계약의 계약기간은 각각 갱신일로부터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조 2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 판매하는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 스낵푸드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조문
○ 가맹점계약상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제10조 1항
○ 귀하가 당사의 신용 및 명성 그리고 품질관리의 유지 및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저질의 상품이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상품 이외의 물품을 판매하였을 경우	"
○ 당사의 물품을 지정 매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였을 경우	"
○ 영업에 필수적인 당사의 합리적인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기타 귀하가 가맹사업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로, 당사가 가맹점계약서 제10조 제2항 소정의 사유로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계약 즉시 해지 사유	관련 조문
○ 귀하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10조 2항
○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귀하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귀하가 가맹점계약 제10조 제1항에 따른 당사의 시정 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로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점계약서 제10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점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
○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수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 통지 후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당사 담당팀 검토→수정계약서(안)작성→가맹점사업자에게 이메일 또는 서면통지→가맹점사업자 동의→수정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를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행사하도록 하거나 업무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당사의 서면 승인을 얻어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당사는 기존의 가맹계약을 종결하고, 상속 등을 받는 자와 새롭게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 분	가능 여부	이전 범위	절 차	비 고
상속	가맹본부 서면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맹본부 소정의 서면통지서 작성 및 제출 → 가맹본부 검토 → 승인여부 통지	
대리	가맹본부 사전 서면 승인시 가능	본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소정의 서면통지서 작성 및 제출 → 가맹본부 검토 → 승인여부 통지	
위탁	가맹본부 사전 서면 승인시 가능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와 당사 사이의 가맹점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외에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당사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화장품 등 판매)의 영업을 귀하가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로부터 사전에 서면(당사의 대표권자가 기명, 날인하고 당사의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에 한하며 그 이외의 서면은 일체의 효력이 없습니다)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만 합니다. 동일한 업종이라 함은 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의미합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의 범위 내에서, 스킨푸드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휴무일 및 영업시간은 사전에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귀하는 당사의 승인 없이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귀하가 운영하는 종업원이 영업시간 중 당사가 지정한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종업원 및 근무형태에 대한 권장사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권장 직원수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 고
--------	-------	----------	-----

3명 이상	직접 근무	가맹사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가맹사업자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	-------	-------------------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수시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감독 절차	시기	담당팀	비 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주의사항 전달	수시	오프라인 그로스팀	
친절도	담당자 매장 방문 → 친절도 확인 → 주의사항 전달	수시	오프라인 그로스팀	

5)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가맹점사업자(귀하)의 의무

한편, 귀하는 귀하의 영업장에 개인정보보호법 소정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관련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귀하는, 귀하의 점포 관리자 및 판매종사원(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포함)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리함에 있어서 위 각 사항을 준수하도록 감독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귀하는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맹점계약서 제15조 참조).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스킨푸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TV 및 잡지 광고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광고비 그리고 개별행사 및 일부 판촉활동 비용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절차
TV 및 잡지 광고활동 등	가맹점모집광고	100%	-	-
	개별광고	-	100%	가맹본부에 광고계획안 발송→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전국 및 지역별 광고, 브랜드광고	100%	-	광고 실시 전 계획안 공지→가맹점사업자 50% 동의→가맹점의 행사 참여
판촉행사	할인행사	할인금액 × 50%	할인금액 × 50%	<판촉> 판촉행사 실시 전 계획안 공지→ (1)가맹점 사업자 70% 이상 동의시→전체 가맹점의 행사참여 (2)가맹점사업자 70% 미만 동의시→동의 한 가맹점만 행사 참여 *다만 별도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품 증정행사	할인금액 × 50%	할인금액 × 50%	

				해당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광고 및 판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	--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귀하는 본인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개별적으로 광고(매스미디어 및 SNS 포함) 및 판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사전에 광고 및 판촉에 관한 사항(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사용 이미지 등)을 당사에게 통지 후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사는 10 일 이내에 귀하에게 승인여부를 통지하기로 합니다.

10. 영업비밀,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호에 따라 다음 가, 나, 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① 가. 귀하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당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 ② 나.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당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 1)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2)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3)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③ 다. 귀하가 당사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

이밖에도 귀하는, 당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자의 정보를 당사가 정한 회원가입신청서 및 관련 약관이 명시하고 있는 목적 및 범위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귀하는, 당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자의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귀하는, 귀하의 점포 관리자 및 판매종사원(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포함)이 당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자의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 위 각 사항을 준수하도록 감독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귀하는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귀하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경우 중 일부를 예시합니다. 그러므로, 아래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귀하가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귀하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신용 및 명성, 그리고 품질의 유지·관리 및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저질의 상품이 공급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상품이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품의 사용 등과 관련된 충분한 설명이 없이 판매되는 경우를 예방하며, 또한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최종 소비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귀하는 귀하의 매장에서 당사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 또는 상품 등의 소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최종 소비자가 아닌 자(예를 들어, 영리의 목적으로 재판매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자 등)에게 공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귀하가 최종 소비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한 상품 또는 상품 등에 대한 합계 공급 가액의 2배 상당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 상표, 상호 등 “영업표지” 일체를 사용할 수 없고, “영업표지”가 일부라도 표시되어 있는 간판, 기타 시설물 등 일체를 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지체 없이 철거 내지는 제거하여야 하며, 기타 상표 및 상호 등 “영업표지” 일체의 사용 중지 요청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이의 없이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가맹본부에서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미판매 상품은 하자(개봉상품,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 상자나 라벨이 훼손된 상품 등)가 있는 것이 아닌 경우 공급가의 90%로 당사가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외의 처분방법은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동의하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도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 계	-	50일 내외	71,800~122,500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50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점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50~45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계약서 제공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등 예치	- 우리은행에 가맹금 예치, 가맹금예치신청서 제공	D-29~27	10,000

점포실측	- 점포실측, 도면확정, 투자비 산출	D-29~25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15	
인테리어 공사	- 도면에 근거한 인테리어 공사 실시	D-15(3일)	47,000~75,000
교육 실시	- 본사상품교육 및 POS 시스템 교육	D-4	
최종개설 소요비용 송금	- 상품대, 인테리어비, 기타 비용 등 송금	D-3	24,800~37,500
상품출고 및 DP	- 상품 DP 및 POS 추가 교육	D-1	
개점	- 개점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사는 가맹점계약서 제7조와 제13조의 취지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자율적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가맹점계약서 제26조 제3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 표에서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가맹본부로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1)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개선사유	가맹본부 부담 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	------------	------------	------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1)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동의를 통해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업체 선정 후 공사를 진행한 다음 견적서 및 비용 청구서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전달함.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가맹점사업자 부담액 확인 후 가맹본부에게 지급	(1)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비용분담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비용 부담이 일부 제외되는 경우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 환수 가능합니다.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 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개점행사비	가맹점 오픈시 판촉인원 파견	오픈시 판촉인원 파견 50% 지원	개점일로부터 3일간	350만 한도
	샘플, 사은품 등의 판촉비용 지원	개점행사비의 100%지원		150만 한도
판촉지원	가맹점 운영시	샘플 및 연출물 100% 지원	진행중	-
		판촉행사 정산금은 할인금액의 50%(균등) 부담	진행중	-
반품지원	계약종료 시 원칙적으로는 반품 가능	단, 하자가 없는 반품인 경우 공급가의 90% 정산 가능	-	-
마일리지	구매회원에게 대한 2% 마일리지 적립	없음	계약기간	소요되는 비용의 100% 당사 부담(해당상품 공급가격 기준)

CRM	고객 유입을 위한 SMS등 발송	없음	CRM행사 진행시	소요되는 비용 전액 당사 부담
테스터	현금 매입액의 1% 범위의 금액 지원	매월 현금 매입액의 1% 금액 지원	계약기간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필요한 경우 본사 직원이나 수퍼바이저를 파견하여 아래와 같은 경영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아래와 같은 경영지도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① 당사가 제공하는 각종 상품에 관한 특성 및 사용 방법
- ② 당해 점포의 시장분석
- ③ 당해 점포의 매출 증진에 관한 사항
- ④ 당해 점포의 경영, 경리, 세무 담당
- ⑤ 기타종업원 교육 지원 등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스킨푸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상품 교육, CS교육, 클레임 교육, 매장운영교육 등	집단 강의, 비대면 교육	개점 전 한 달 이내	필수 교육
보수 교육	판매화법 및 서비스 응대 교육	현장 교육, 비대면 교육	반기 1회	필수 교육
	정기 교육	집단 강의	년 1회	필수 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스킨푸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7 ~ 8시간	-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4 ~ 5시간	-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귀하가 가맹본부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훈련에 관한 사항으로서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해당사항 없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영업본부(02-597-4191)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 ~ 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http://www.theskinfood.com>)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2] 품목 및 상.하한 공급가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가맹본부	상호(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	---	----	------

신청인의 계좌	
------------	--

가맹본부의 계좌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8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귀하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